
외 부 감 사 계 약 서

외부감사계약서

감사의뢰인(갑) : 주식회사 아이피에스

감사인(을) : 삼일회계법인

위의 갑, 을 양자들 상호간에 「~~증권법~~ 회계법」 제 21 조 및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 또는 "외부감사"라 한다)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8 조의 규정에 의한 반기재무제표(이하 "중간재무제표"라 한다)의 검토(이하 "검토"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감사 및 검토 목적)

- ①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행하는 감사는 외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목적으로 하며, 검토는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행하는 감사는 갑의 재무제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가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및 기업집단결합 재무제표준칙을 포함한다)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을의 감사는 갑의 재무제표가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재무제표 전반에 대해 중요하지 않는 위배사항까지 적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을은 갑의 제반법규의 불이행·허위 또는 부정행위 사항의 방지 및 발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재무제표 작성과 적절한 공시·회계자료 유지·내부통제제도의 구축과 운용·회계정책의 선정과 적용·회사자산의 보호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의 이와 같은 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 의하여 경감되지 아니한다.

③ 회계감사는 감사보고서 수신인을 위한 것이지 제 3 자가 의존할 만한 상황이나 특정 거래를 예상하여 계획되거나 수행된 것이 아니므로, 갑은 을에게 제 3 자에게는 잠재적 이해관계가 되는 항목들이 강조되지 않거나 특정거래와 관련하여 제 3 자가 상이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④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행하는 중간재무제표의 검토는 중간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2 호 중간재무제표의 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작성된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을 통해 감사보다는 낮은 보통수준의 확신을 소극적으로 표시하는 데 있다.

⑤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행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는 외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계 및 운영되었는지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고 감사보고서에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표명하는데 있다.

제2조(을의 업무수행 기준)

① 을이 실시할 감사의 기준은 외감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의 회계감사기준(동 기준 보칙 1.1 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을 포함하며, 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따라서 을은 회계감사기준 100(총칙) 문단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감사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다르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갑의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계획하여 실시한다. 을의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시사의 방법에 의해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며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③ 갑은 갑이 구축한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상의 통제절차가 재무제표 왜곡표시사항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수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부적 고유한계와 을이 준수하는 감사기준에 의한 감사가 갑의 전체 거래 중 일부의 자료에 대하여 표본시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감사의 한계로 인하여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④ 을은 제 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갑으로부터 제공받는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감사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진실성을 신뢰하며, 갑의 임직원에 의한 위조, 변조 또는 허위 등에 대한 조사절차는 을의 감사범위가 아니다. 이러한 문서로 인하여 을이 갑의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감사보고서에 언급하지 못한 경우 을은 책임이 없다.

⑤ 을이 실시할 중간재무제표의 검토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정한 한국의 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이하 “검토준칙”이라 한다)에 의한다.

⑥ 중간재무제표의 검토는 감사시 요구되는 정보보다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검토준칙에 따라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에 의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을은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⑦ 제 1 조 제 2 항 및 제 3 항, 제 2 조 제 1 항,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은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에 준용한다.

⑧ 제 1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행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의한다. 동 검토는 경영관리목적의 내부통제 전반의 유효성이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및 부정적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은 을이 표명하는 검토의견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취약점이 누락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의 이와 같은 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에 의하여 경감되지 아니한다.

⑩ 제1조 제3항, 제2조 제1항 · 제4항, 제4조, 제5조, 제9조 제2항 · 제3항 · 제4항, 제10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제8항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에 준용한다.

제3조(감사 및 검토대상)

① 감사 및 검토대상이 되는 갑의 재무제표 및 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재무제표

2009년1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3개년간의 재무제표

2. 중간재무제표

2009년1월1일부터 20011년6월30일까지 3개년간의 반기재무제표

3. 2009년1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3개년간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

② 이 계약체결 당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감사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대상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외감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감사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대상종속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감사 및 검토 실시기간)

을이 실시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예정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감사 및 검토 장소)

갑은 감사 및 검토실시기간 중 을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의 제출)

① 을은 갑에게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1.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 _____부를 중간재무제표기준일후 _____일까지

2.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_____부를 재무제표기준일후 _____일까지

② 연속감사의 경우 해당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을 준용한다.

제7조(감사 및 검토보수)

①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갑의 제14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검토 보수액(이조에서 “감사보수” 라 한다)은 일금 오천삼백만 원정 (₩ 53,000,000)으로 하고, 연속감사의 경우 감사보수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수액은 감사대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매출총액, 사업장 수, 감사소요시간, 지분법적용대상회사와 연결대상회사 수의 증감 등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조정계산하고 잔금 지급시에 조정된 과부족금액을 가감한다.

③ 제 1 항 내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감사 및 검토보수액은 공급가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수 이외에 감사 및 검토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은 별도로 청구한다.

1. 출장비(숙박비 및 교통비 포함)

2. 인쇄비

3. 통신 및 조회관련비용

4. 감정료

5. 기타 실비변상적 비용

⑤ 감사 종료 후 갑이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감리대상으로 선정되어 을이 감리업무를 지원할 경우, 정부기관 등 대외기관에서 갑과 관련된 조사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을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그리고 갑과 관련한 소송 등과 같이 갑에 대한 을의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및 기타 이와 유사하게 을이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경우 을이 실제 투입한 시간에 상응하는 보수 및 비용을 별도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시간당 보수금액은 갑과 을이 추가 협의하기로 한다.

제8조(감사 및 검토 보수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이 계약과 동시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검토보수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지급기한	금액
계약금	2009.5.21	13,250,000
1 차중도금	2009.8.19	13,250,000
2 차중도금	2009.10.26	13,250,000
3 차중도금	2010.1.22	13,250,000
잔금(정산보수)및 비용	2010.3.26	정산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지급시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③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제 6 조에 의한 보고서 제출일을 경과하여 보고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그 경과일에 대하여 갑의 주거래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제 7 조에 의한 감사 및 검토보수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상기 제1항의 감사 및 검토보수가 지급기한을 2주 이상 경과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갑은 그 경과일에 대하여 을의 주거래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제 7 조에 의한 감사 및 검토보수액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⑤ 연속감사의 경우는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해당금액을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한 및 금액에 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9조(감사 및 검토 자료의 제공 등)

- ① 갑은 재무제표감사 및 검토의 대상이 되는 재무서류를 다음 각호의 지정기일까지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재무제표감사 : 정기주주총회 6주일 전
 2. 중간재무제표검토 : 중간재무제표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
- ② 갑은 을이 외감법 제 6 조에 따라 감사실시(중간재무제표 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회사 및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에 필요한 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때에는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을의 감사 및 검토상 필요한 서면 또는 구두질문에 대하여 신속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을에게 적시에 통보하고, 감사종료(중간재무제표 검토종료를 포함한다)시에는 재무제표 등이 사실과 같다는 것을 포함하여 감사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 경영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갑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 대상이 되는 보고서를 감사기간 중 을이 요구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 1 항에 의한 제출기한은 관련 규정이 변경될 경우 동 규정에 근거하여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 ⑥ 을이 갑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갑은 이를 승인하고 적절한 수단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인의 비밀유지의무)

-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른 감사 및 검토상 지득한 기밀정보를 법적 또는 직업적으로 공개할 권리나 의무가 없는 경우에, 적절하고 명확한 승인 없이, 감사인 또는 소속기관 외의 외부에 누설하지 않거나 직무상 지득한 기밀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보조자의 감사 및 검토상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을의 ~~직내외~~ 감사품질관리를 위해 검사 및 감독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감사 및 검토상 지득한 비밀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해약)

- ①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약을 할 때에는 을이 갑에게 이미 청구한 해당사업연도 보수액은 을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감법 제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기재무제표 검토 착수일 이후에 해약할 때에는 당해사업 연도 감사계약 보수액의 2 분의 1을, 결산감사 착수일 이후에 해약할 때에는 당해사업 연도 감사계약 보수액의 전액을 갑은 을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1 개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해약을 할 때에는 을은 이미 영수한 해당사업연도 보수액의 2 배를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외감법 제 4 조 제 4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해임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영수한 해당 사업연도의 보수액을 반환한다.
- ④ 갑이 갑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 계약 제8조 제1항의 감사 및 검토보수 지급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외감법 제6조 제3항 및 제4항(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환급 또는 배상 없이 감사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⑤ 갑 또는 을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⑥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을의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는 소멸한다.

제12조(배상책임 및 면책)

- ①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의 책임은 갑에게 있으므로, 갑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조, 변조,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을에게 제공하거나 감사 및 검토상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을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위와 같은 갑의 잘못과 관련하여 을이 제3자로부터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 갑은 을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그 방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을이 소송결과 지게 되는 책임에 대하여도 갑은 을을 면책시킬 의무가 있다.
- ② 을의 의도적인 계약사항 위반, 감사 및 검토 수행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을은 본 계약에 의거 수령하는 당해연도 감사보수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지며, 동 사항 이외에 을의 감사 및 검토 수행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③ 갑은 을의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모든 형태의 배상청구와 관련한 책임, 비용 등에 대하여 을의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당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갑이 제5조에 의한 시설제공의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등을 지연함으로써 감사 및 검토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의 이용)

- ① 갑은 유가증권의 신규상장, 기타의 용도로 국내외 관련 법규상의 제출서류(이하 “갑의 재무서류”라 한다)에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포함하거나 을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을의 사전 서면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제 1 항의 승인 또는 동의요청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재무서류와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대조·검토한 후에 서면승인 및 동의서를 제공한다.
- ③ 제 2 항의 업무는 본 계약과는 별개의 업무이며, 그 업무의 범위와 보수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다.
- ④ 갑은 재무서류(이와 유사한 서류를 포함한다)와 함께 감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를 인쇄매체·인터넷 웹사이트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출판·복제·유통·편집을 하려 할 경우 또는 기타의 문건에서 을에 대해 언급을 하려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다.

1. 문서의 내용을 을에게 제공하여 을이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을의 승인이 없으면 문서의 내용을 확정하거나 배포할 때 을의 감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 또는 을에 대한 언급을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3.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가 인쇄매체, 전자매체 기타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 복제될 경우 갑의 재무제표는 주석까지를 포함한다.
 4. 을은 감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정보가 갑의 재무서류에 적절히 기술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⑤ 갑이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를 할 경우 갑은 을에게 전자공시 전에 전자형태의 관련 문서를 모두 제공할 것을 동의한다.
- ⑥ 을이 제공한 감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를 갑이 다른 형태의 문서나 매체로 변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류 등에 대하여는 을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14조(감사 또는 검토조서의 소유권)

감사 또는 검토기간 동안 을에 의해 작성된 전자문서나 전자 파일 등을 포함한 감사 또는 검토 조서에 대한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

제15조(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가 첨부된 타 문서에 대한 책임)

- ① 갑의 사업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 등 기타 제출서류들이 본 계약에 의하여 감사 받은 재무제표 또는 을의 감사의견 등을 포함하는 경우, 을은 그 제출서류들과 감사 받은 재무제표에 중대한 불일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제출서류를 숙독할 수 있다. 그러나 을은 그 제출서류 중 회계감사기준 720에서 규정하는 감사인으로서 의견표명할 의무가 없는 기타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② 갑이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갑의 재무서류(이와 유사한 서류를 포함한다)에 을이 발행한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키거나 첨부한 경우와 을에 대하여 언급한 경우 을에게는 동 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검토하거나 입증할 책임이 없으며 어떠한 절차도 수행할 책임이 없고, 갑은 이로 인하여 을이 소송 또는 소송외적으로 부담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6조(갑에게 제공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책임)

갑은 을에게 을이 감사 시 작성한 소프트웨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소프트웨어 등은 갑의 이용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을의 목적만을 위해 특수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갑만이 “있는 그대로” 이용하고, 제3자에게 배포 혹은 공유되어서는 아니 된다. 을은 갑이 이용할 어떤 목적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의 충분성 혹은 적절성에 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한편, 갑의 이용을 위해 특별히 개발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17조(인터넷을 통한 정보소통에 대한 책임)

을은 전자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갑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바이러스검사 등 적절한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을은 갑에 대한 정보의 전자전송으로 인해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에 대한 책임)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을의 검토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소극적으로 표시하는데 있다.

② 갑은 외감법에 따라 재무정보, 특히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③ 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는 내부회계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한 확신을 주거나 모든 중대한 취약점을 발견하기 위함이 아니다. 충분히 잘 설계된 내부통제제도라 할지라도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집행위험을 피할 수는 없으며, 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 표명은 갑의 운영실태평가에 대한 소극적 확신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모든 중요한 취약점들이 검토과정에서 발견될 것을 보장하지 않으며, 중요한 취약점에 의한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사후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다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 을이 소극적 확신을 얻지 못함.
2. 검토계획의 수립, 검토업무의 수행 및 판단에 있어서의 부적절성
3. 전문가로서의 적격성이나 정당한 주의의무의 결여

4. 검토기준의 미준수

④ 을은 정규회계감사 과정에서 을의 주의를 요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상의 중대한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동 통보는 갑이 아닌 제3자의 이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동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상호합의)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조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시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해석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제20조(관할법원)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의 제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기타사항)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이 각기 기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09년 4 월 29 일



감사의뢰인(갑)

사무소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번지

상호 : 주식회사 아이피에스

대표이사 : 문상영

감사인(을)

사무소소재지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91번지 LS 용산타워 16층

감사인명 :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 안경태